

1. 서론
2. 목적
3. 여러 활동 분야에서의 요건
  - 3.1 정직원 및 임시직원, 연수생, 계약직원과 자원봉사자
  - 3.2 미디어 및 홍보 활동
  - 3.3 프로젝트 파트너
  - 3.4 프로젝트와 현장 실태조사 및 프로젝트 파트너 방문
  - 3.5 협력 파트너와의 업무
4. 취약계층이 위험하다는 의심이 들 때의 절차
  - 4.1 일반 원칙
  - 4.2 국제본부 내 의심 사례
  - 4.3 프로젝트 파트너 관련 의심 사례

## 1. 서론

교황청 재단으로 설립된 '고통받는 교회 돕기'는 특히 박해, 억압 또는 빈곤의 결과로 고통받는 교회를 돕는다. ACN 은 무엇보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없거나, 이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에서 지역 교회의 프로젝트들을 장려한다. 세계 각지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오는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기준은 그 프로젝트의 사목적 차원이다.

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호와 더불어 의존적인 상황이 처한 성인(이하 취약계층이라고 함)의 보호는 ACN의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며, 이는 ACN이 고용주이자 국제 협력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이다.

ACN 의 취약계층 세이프가드에 대한 정보는 후원자들과 우리 자선단체의 활동에 관심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요청 시 제공된다.

고통받는 교회 돕기는 전 세계에서 교황청 재단으로 활동하지만, 국제 본부는 독일법을 따라야 하며, 독일에서 '비영리 유한 회사(gGmbH)'<sup>1</sup>로 등록되어 있다. 이번 세이프가드 지침은 '고통받는 교회 돕기 gGmbH'에 적용되며, 최종 책임은 전무이사 두 명인 필립 오조레스와 레지나 린치에게 있다.

---

<sup>1</sup> Non-profit limited liability company

## 2. 목적

본 세이프가드의 목적은 ACN 영향권 안에 있는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모든 형태의 성 학대와 기타 형태의 권력 남용을 막는 것이다. 이는 로마의 그레고리오 대학교 산하 아동보호센터(CCP)와 2019 년 3 월 29 일 발표된 바티칸 시국의 '미성년자와 취약계층 보호 가이드라인'을 따르고,<sup>2</sup> 독일법을 완전히 준수하면서, 존중과 상호 화합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.

세이프가드는 미성년자 및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성 학대 및 기타 형태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달성 가능하고, 검증 가능하며, 구속력이 있는 조치를 제시한다. 상호 존중의 규칙을 수립하여 모든 직원이 높은 수준의 신중함과 안전함 속에서 취약계층을 대할 수 있게 한다. 이 지침은 ACN 국제본부의 모든 직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데, 즉 정직원과 임시직원 모두와 연수생, 보조직원, 계약직 근로자 및 자원봉사자이다. 각 나라의 ACN 지부는 2020 년 1 분기 말까지 이 세이프가드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세이프가드를 개발해야 한다. 이때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는 부분도 포함시켜야 한다.

## 3. 여러 활동 분야에서의 요건

### 3.1. 정직원 및 임시직원, 연수생, 계약직원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무급 명예직원의 경우:

- 모든 직원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. 서약서는 고용 계약서의 일부이다.
- 이와 더불어 특정 업무 때문에 취약계층과 보다 밀접하고 집적적인 접촉을 갖는 직원은 그런 일을 하게 허락하는 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.
- 이 허가증에 업무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된 경우, 그 항목의 법적 의미를 신중히 검토하여, 고용 조건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 이 허가증은 5 년마다 갱신해야 한다. 이 부분은 허가증과 관련된 규정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진다.
- 모든 직원은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된 정보와 교육을 받아야 하며, 관련 규정을 개발하는 데에도 참여해야 한다.
- 인사부는 세이프가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과 연수를 제공하고, 특정 활동 분야와 관련된 추가 연수도 마련해야 한다. 모든 직원은 기본 교육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.
- 취약계층과 더 밀접한 접촉을 하는 특정 업무를 맡은 직원은 추가적인 집중 연수를 받아야 한다. ACN 의 경영진은 어떤 직원들이 이런 집중 연수를 받아야 할지 결정할 책임이 있다.
- ACN 의 모든 구인 광고와 신규 고용 계약서는 세이프가드를 언급해야 한다.
- 모든 연수생, 임시직원, 계약직원, 자원봉사자 및 무급 명예직원은 ACN 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업하기로 구두로 합의할 때,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행동 규칙을 준수하기로 서약하는 것이다.
- 상기 서약을 어떤 직원이 어겼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, ACN 의 경영진과 림부르크 교구의 세이프가드 담당자와 연락하는 ACN 의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해, ACN 경영진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여기에는 시민 당국에 알리는 것도 포함된다.
- 취약계층을 위험에 빠트리거나 학대하거나 성 학대를 한 것이 법적으로 입증되면, 가해자는 ACN 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으며, 앞으로도 일할 수도 없다.

---

<sup>2</sup> Law No. CCXCVII. 미성년자와 취약계층 보호

### 3.2. 미디어 및 홍보 활동

ACN 의 미디어 및 홍보 활동에서 필수적인 부분은 ACN 이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프로젝트, 캠페인 및 기타 이벤트를 알리는 일이다. 이러한 활동은 때때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. 이런 임무를 맡은 ACN 의 모든 직원은 취약 대상자의 존엄성을 항상 보장하고, 충분히 온전함을 보호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행동 규칙을 따를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윤리적 기준의 준수에 충실하기를 서약한다.

- 어린이들과 그 가족은 사회, 문화, 경제적 환경에서 자신만의 강점과 잠재력을 지닌 개별 인격체로 그려져야 한다.
- 개인은 사진이나 영상에서 성적으로 선정적인 방식으로 묘사되지 않아야 하며, 사진과 동영상은 노골적인 성적 특징을 보여주지 않아야 한다.
- ACN 취약 활동의 결과로 어린이들과 그 가족이 위험에 처하거나 차별에 노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.
- ACN 을 대신하여 일하는 사진작가, 언론인과 다큐멘터리 제작진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기준을 명시하는 문서를 받고, 이를 준수해야만 한다.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개별 브리핑을 통해 이런 기준을 지키는 것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받을 것이다.
- ACN 직원은 포럼이나 블로그 및 소셜 네트워크 댓글을 쓸 때에도 절제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며, 민감한 자료를 취급할 때 해당 국가의 데이터 보호 지침을 따를 것이다.
- ACN 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조치 및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할 것이다.

### 3.3. 프로젝트 파트너

원칙적으로 ACN 은 본사가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으며, 따라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. 그러나 ACN 은 지원에 대한 계약 보증과 프로젝트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되는 취약계층의 안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, 이런 문제를 특별히 주의하고 민감하게 처리한다. 만약 ACN 직원이 주어진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학대 의심이 들 경우, 섹션 4 에 제시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.

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.

- ACN 직원은 프로젝트 파트너에게 취약계층 보호라는 문제를 제기할 의무가 있다.
- 프로젝트 지원신청과 사후 평가에서 프로젝트 파트너는 취약계층 보호 기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.
- ACN 의 원조 기준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프로젝트 지원의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측면으로 포함될 것이다.
- 프로젝트 합의서에는 취약계층 보호 의무를 설명하는 부분이 포함될 것이다.

### 3.4. 프로젝트와 현장 실태조사 및 프로젝트 파트너 방문

- ACN 를 대표하여 프로젝트 파트너 및/또는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는 개인은 해외여행 중에 준수해야 할 취약계층 보호 지침서를 받을 것이다. 이는 ACN 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취약계층을 대할 때 보여야 하는 적절한 행동에 관한 지침이다.
- ACN 명의로 여행하는 개인은 지침서를 따르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.
- 실태조사 방문을 이끌거나 동행하는 직원은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### 3.5. 협력 파트너와의 업무

- ACN 과 협력하게 되는 파트너는 세이프가드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된다.
- 파트너는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본질적으로 동등한 일반 규정을 따를 것을 서약해야 한다.

## 4. 취약계층이 위험하다는 의심이 들 때의 절차

### 4.1. 일반 원칙

- 사건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, 혐의 자체에 대한 실제 조사보다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.
-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모든 학대 혐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추적하여 기록해야 한다.
- 이런 경우 단순 혐의와 입증된 남용 사례를 구별하여, 학대 혐의자(들)를 미리 판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. 마찬가지로 고발을 한 사람도 가능한 모든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. 사건 관계자가 동료 직원, 프로젝트 파트너 또는 다른 사람이든 간에 ACN 의 활동 영역 내에 있는 취약계층의 안위가 위험하다는 의심이 분명히 드는 경우, 모든 직원은 섹션 4.2 및 4.3 에 명시된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할 할 의무가 있다. 이 경우, 직원은 통상적인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진다.
-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직접 접촉했거나 공무상 성폭력·학대 문제 등을 면밀히 다뤄야 할 의무가 있는 모든 직원은 멘토와 동행할 권리가 있다. ACN 은 예방적 차원에서 멘토들과의 적절한 논의도 제공할 것이다.

### 4.2. 국제본부 내 의심 사례

직장동료(정직원, 임시직원, 연수생, 계약직원, 자원봉사자, 혹은 기타 무급 명예직원이든 상관없이)와 관련하여 의혹이 제기될 경우, 그 직원은 ACN 의 경영진과 림부르크 교구 담당자와 연락하는 ACN 의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.

만약 경영진 중 한 명과 관련된 의혹이 생기면, 그 직원은 ACN 수석대표와 더불어 림부르크 교구의 세이프가드 담당자와 연락하는 ACN 의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.

이런 경우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- 학대 의심 사건을 ACN 연락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하며, 이 담당자는 해당 의혹을 경영진에게 알려야 한다. 그 후 경영진은 수석대표에게 알린다. 또 사건의 시초부터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.
-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면, 학대 혐의자는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즉시 행정 휴직에 들어간다.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학대 혐의자가 ACN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. 이것은 생길 수 있는 다른 피해자를 보호하고,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학대 혐의자의 무죄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다. 회사 소유의 모든 컴퓨터 장비와 휴대 전화는 ACN에 넘겨야 한다.
- 림부르크 교구의 세이프가드 담당자와 연락하는 ACN 담당자는 가능한 한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 동시에 가능한 경우 관련자의 부모,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에게도 연락해야 한다. 특정 상황과 필요에 따라, 다른 전문가(의사, 심리학자, 변호사)도 이 대화의 만남에 참석할 수 있다. 이때 자세한 메모 또는 대화록을 기록해야 하며, 가능하다면 모든 참석자가 대화록에 서명해야 한다.
- 대화의 만남에 함께 했던 참석자들은 차후에 대화록을 받게 되며, 그 내용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, 각 참석자는 다른 대화록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. 이 대화록은 기록되어야 하고 분 단위로 작성되어야만 한다.
- 대화록은 만남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발송되며, 동시에 참석자들에게 다른 대화록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통지해야 한다. 합의된 적절한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하며, 이를 지정해야 한다.
- 합의된 기간 내에 대안 대화록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, 이 사실 또한 기록되고 문서화해야 한다.
- 만약 대화의 만남을 통해 학대 혐의자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면, 사건 관계자들은 ACN의 재판장과 함께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논해야 한다.
- 만약 학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, 경영진은 민법/형법 절차가 시작되도록 해야 한다. 가해자에게 당국에 자진 진술하도록 권유하거나, 가해자가 이를 꺼릴 경우 관련 경찰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.
- 학대 혐의자가 민사당국과 교회법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, 그의 정직 및 행정휴직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.
- 반면에 가해자가 (고용계약 시 서명한 서약서에 명시되어 있는)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, 그는 즉시 해고당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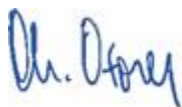
#### 4.3. 프로젝트 파트너 관련 의심 사례

이런 경우, 사건을 프로젝트 부서장에게 의뢰해야 한다. 이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- 프로젝트 부서장은 사건을 기록하여, 그 문서를 ACN 국제본부 수석대표와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며, 추가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.
-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, 국제본부 수석대표와 사무총장이 합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. 위의 두 가지 경우가 불가능할 때, 프로젝트 부서장이 필요한 비상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프로젝트 부서장은 국제본부 수석대표와 사무총장이 승인한 조치를 이행하여 관계자들에게 통보하고, 필요한 조치를 위임하며, 사안을 충분히 문서화하여 추가 조사를 지원한다.

- 해당 국가의 프로젝트 책임자는 그 프로젝트 파트너의 직속 상사에게 제기된 우려 사항을 즉시 알려야 한다. 단, 직속 상사가 먼저 조사를 의뢰해 왔으면, 그에게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요청하고,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질문해야 한다.
  - 직속 상사는 2019 년 5 월 7 일 반포된 자의교서 '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(Vos Estis Lux Mundi)'<sup>3</sup>의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질문을 받을 것이다.
  - 교회법과 일반적인 법률에 따라, 학대 혐의자의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를 추정하고,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.
  - ACN 은 학대 혐의자의 직속 상사에게 해당 국가의 법률조항에 따라 관련 범죄기관에 학대가 의심되는 사실을 보고하라고 촉구해야 한다. 의심스러운 경우 ACN 은 신앙교리성에 통보/협의해야 한다.
  - 학대 혐의자의 직속 상사는 공식적인 후원 파트너인 ACN 에게 사건 조사, 최종 결과와 조치 등을 통보해야 한다.
  - 직속 상사가 사건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할 경우, ACN 은 향후 협업과 관련하여 추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. 이는 프로젝트 부서장, 국제본부 수석대표와 사무총장이 함께 사례별로 결정할 것이다.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.
-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상환
  - 이미 승인된 보조금 지급 보류
  - 사업협약 해지
  - 프로젝트 향후 협업 해지, 후속 요청 거절

괴니히슈타인  
2019 년 8 월 30 일



필립 오조레스  
전무이사



레기나 린치  
전무이사

---

<sup>3</sup> [http://w2.vatican.va/content/francesco/en/motu\\_proprio/documents/papa-francesco-motu-proprio20190507\\_vos-estis-lux-mundi.html](http://w2.vatican.va/content/francesco/en/motu_proprio/documents/papa-francesco-motu-proprio20190507_vos-estis-lux-mundi.html)